

소규모 합병 공고

(주)다우기술은 2017년10월26일 (주)한국에이에스피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 527조의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: (주)다우기술이 (주)한국에이에스피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: (주)다우기술 : (주)한국에이에스피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: (주)한국에이에스피
 - 나. 본점소재지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81 2층(서초동)
4. 합병기일: 2018년1월1일
5. (주)다우기술과 (주)한국에이에스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: 2017년11월0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나. 제출기간: 2017년11월09일 ~ 2017년11월23일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: 2017년11월23일까지 (주)다우기술 기획팀에 제출(070-8707-1008)
 - 2) 실질주주: 2017년11월20일(명부주주보다 3일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다우기술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다우기술과 (주)한국에이에스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7년 11월 일

주 소:

주민등록번호:

성 명: (인) (연락전화번호 :)

2017년 11월 09일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81 디지털스퀘어6층

주식회사 다우기술

대표이사 김 윤 덕